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3. 11. 29.(수)
제 413회 정례회
제3차 산업경제위원회
회

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[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7일

3. 제안이유

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,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
나.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5조)

다.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(안 제6조)

라. 도시농업인 지원 및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
(안 제7조)

마.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

- 정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,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2011년 11월 제정하였음(시행 2012. 05.)
- 이러한 도시농업¹⁾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 극복 및 식량위기 해소 그리고 지역순환 먹거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농민과의 교류와 협력으로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으며, 또한, 텃밭활동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
- 이처럼 도시농업은 단편적인 농업활동이 아닌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가치 아래 통섭적 기능과 확장성을 갖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, 이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

1) 도시농업이란?

- 어원적 개념 : 도시지역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·여가·학습·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작물, 수목, 화초 재배 및 곤충(양봉)을 사육하는 행위
- 문헌적 개념 :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(옥상정원, 실내공간농업, 학교정원, 도시민 농장, 동물키우기 등)
- 법률적 개념 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주택활용형, 근린생활권, 도심형, 농장형·공원형, 학교교육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됨

- 본칙 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,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
- **안 제3조**는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시책 추진,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- **안 제4조**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현황과 전망, 지원 방향,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- **안 제5조**는 도시농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, 정책개발, 기술 도입 및 홍보, 민관협치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다만, 현재 충청도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도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함
- **안 제6조**는 도지사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**안 제7조**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**안 제8조**는 도시농업 전문인력²⁾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2) 도시농업 전문인력 : 도시농업관리사를 의미하며,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,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함

○ 그 밖에 타 시도의 입법례는 아래 표와 같음

<표> 타 시도 도시농업 관련 입법례

연번	조례(시행규칙)명	제정일
1	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2-11-01
2	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2-07-11
3	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11-12-30
4	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2-07-19
5	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	2011-03-02
6	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1-04-08
7	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3-12-31
8	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3-09-30
9	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1-05-03
10	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19-08-07
11	전라북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	2016-09-30
12	전라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-06-18

- 타 시도의 도시농업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이며, 전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이전에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
- 이제라도 충청북도 역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는 기후위기 문제 극복 및 식량위기 해소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, 도농상생 발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, 지원사업 추진, 도시농업위원회 설치,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- (타당성)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며, 향후 도시재생, 스마트팜, 관광자원화 등 다른 정책분야와 결합하여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, 타당성, 법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, 향후 도지사는 중복의 여건에 맞게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, 도시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임